남북 분쟁해결합의서 체결에 따른 중재협력의 과제

김 상 호*

〈목 차〉

Ⅰ. 序論
Ⅱ. 南北韓 交易에 따른 갈등事例
Ⅲ. 紛爭解決合意書의 構成과 內容
Ⅳ. 紛爭解決合意書의 實行課題
Ⅴ. 結語

* 부산외국어대학교 국제통상학부 교수

Ⅰ. 序 論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이 평양에서 서명한 '6.15 남북공동선언'이후 남북간의 경제교류는 꾸준히 증대되고 있다. 그리고 정치적인 변수가 장애요인으로 남아 있어 시간은 걸리겠지만 앞으로 북한과 일본, 북한과 미국과의 수교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된다.

남북한간의 경제교류의 활성화는 그에 비래하여 한반도를 중심으로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등 전통적인 동서국가간의 동서무역 및 이들 국가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 또한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들 경제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해결이 앞으로 남북한간의 원활한 경제교류는 물론 한반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동서경제교류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6.15 남북공동선언'은 UN에서도 환영과 지지를 받았다. 2000년 11월 1일 제55차 UN총회에서는 남북정상회담과 6.15 남북공동선언을 환영하고 지지하는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 및 통일"이라는 제목의 이 결의안은 189개 UN회원국 중에서 압도적 다수인 157개 회원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였으며, 남북한의 제안 설명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12개국 대표들의 지지발언 이후 만장일치로 채택된 바 있다. 또한 같은 해 12월에 개최된 남북장관급회담에서는 '6.15 남북공동선언'의 가시적 이행을 위해 투자보장, 상사분쟁, 이중과세 방지, 청산결제 등 4대 현안에 남북대표가 일괄 서명한 바 있다. 이는 남북경제협력의 제도적인 틀을 남북한 당국이 마련한 것으로 중요한 의의가 있다.

본고에서는 남북간의 위 4대 현안 중 상사분쟁해결합의서(정식명칭: 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를 중심으로 남북간 분쟁해결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그동안 남북간 교역에서 나타난 갈등사례를 살펴보고 분쟁해결합의서의 내용을 분석한 후 합의서의 추진에 따른 실행상의 문제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Ⅱ. 南北韓 交易에 따른 갈등事例

1. 交易 갈등事例[1]

1992년 인천항으로 반입한 북한산 벌꿀, 참깨 등에 대해서 국내의 반입업체가 통관절차를 수행하던 중 의문점이 있어 관련기관에서 조사한 결과 반입승인을 정식으로 얻지 않고 반입승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2]

한편, 국내업체가 땅콩 300톤을 반입하여 제과업체에 공급하여 사용하였는데 품질은 양호하였다. 그러나 부산항에 반입된 2차분 2,000톤은 제3국산 위장반입 혐의로 인해 물품이 압류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였다.[3] 남한에서 반입한 평양소주가 국내에서 높은 가격으로 잘 팔리고 있다고 생각한 북한 당사자가 남한 당사자와 체결한 독점공급계약서에 위반되는 2배의 가격인상을 일방적으로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4]

대북 반출은 홍콩이나 중국 측 중개상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내기업이 1995년 1월 홍콩 측으로부터 신용장을 받아 S해운을 통해 설탕 200톤을 북한으로 반출한 후 대금지급을 의뢰하였다. 그러나 국내 반출업자는 주거래은행으로부터 Unpaid통지를 받았는데 그 이유는 네고서류 중 Invoice에 DPRK 표시가 빠졌다는 것이었다.[5] 또 다른 거래에서 국내기업이 LDPE(저밀도폴리에틸렌) 2,000톤을 북한으로 반출하기로 하고 대금결제는 홍콩의 중개상을 통해 받기로 하였다. 홍콩의 중개상은 100% 신용장으로 대금결제를 하겠다고 했으나 국내의 반출기업은 보다 안전한 선적 전 T/T입금을 요구하였다. 가격은 당사자간의 협의 끝에 톤당 737불로 합의되었으나 대금지불방법에 대해서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문제가 된 경우가 있었다.[6]

---

1) 본 사례는 통일원에서 발행한 '남북교역사례집' Ⅳ권(1995. 12)에서 관련 내용을 인용하였다. 가능한 최근의 자료를 인용할려고 했으나 유감스럽게도 위 사례집은 Ⅳ권 발행을 마지막으로 현재는 발행되고있지 않다.

2) 통일원, 남북교역사례집 Ⅳ. 1995.12. p.16.

3) 상게서, p.7.

4) 상게서, pp.167-169.

5) 상게서, pp.191-193.

남북한간의 연계교역[7]을 위해서는 남북 상호간에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합의 후 물물교환방식으로 계약을 추진하며 결제는 제3국(홍콩이나 중국)을 통한 신용장개설 형태로 계약이 체결된다. 그간 남북한간에는 북한의 농산물(피호두, 깐호두, 고사리 등), 한약재와 남한의 세탁비누, LDPE와의 연계교역 실적이 있다. 연계교역에서 북한에서 반입한 물품이 견본과 크게 상이해서 남한기업이 손해를 본 경우가 있었다. 또한 도착물량이 계약물량보다 부족한 경우가 있었다. 연계교역의 경우 홍콩이나 중국에서 북한으로 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는 은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남한기업으로서는 이점이 문제였다.[8]

남북교역에 제3국이 피해를 본 경우도 있다.[9] 이 사례는 남북간 교역에 말려든 중국 티베트자치구가 농산물 판매대금을 떼이게 되자 한국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자 문제가 된 경우이다. 1994년 11월 부산의 S무역이 마카오 소재 북한 무역상사인 Y무역을 통해 북한산 깐호두 250톤을 반입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했다. Y무역은 북한에서 물량확보가 어렵게되자 중국 티베트자치구와 계약, 1995년부터 3차에 걸쳐 티베트 산 깐호두 243톤을 S무역에 공급했다. 그러나 깐호두를 공급한 티베트무역협회가 북한으로부터 전체 대금 중 1차분인 25만불(50톤)밖에 받지 못했고 2-3차분 109만불(218톤)을 북한측의 대금지급 기피로 날릴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티베트 측이 북한 Y무역에 항의하자 Y무역은 남한의 S무역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했다고 발뺌하는 한편 위임장을 써주며 S무역으로부터 직접 돈을 받을 것을 요청하였다.

국제적인 위신이 걸린 고소사건을 접수한 부산경찰청이 S무역을 수사한 결과 S무역은 깐호두 1차분(25만불)과 2차분 대금(21만불)을 이미 북한 Y무역에 현금결제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 3차분 88만불은 1994년 Y무역에 반출한 컴퓨터와 백설탕, 생고무 등 생필품대금과 상계처리 되어 사실상 S무역이 깐호두 대금을 모두 지불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 사건은 북한상사의 계약위반으로 야기되었는 바 티베트 측이 받지 못한 문제의 대금은 티베트의 경제가 휘청거릴 정도의 거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

6) 상게서, PP.200-201.

7) 연계교역(무역)이란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연계된 무역거래로서 물물교환(barter trade), 구상무역(compensation trade), 대응구매(counter purchase)의 형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수출입을 말한다.

8) 상게서, pp.209-214.

9) 부산일보 30면(1996.6.11).

2. 事例分析

위 사례에서 본 것처럼 남북교역에서 분쟁이 발생할 소지는 잠재되어 있다. 평양 소주 반입에서 북한측은 남한 자본주의체제의 유통경로나 유통단계별 판매마진을 모르는데서 문제를 야기시켰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체결 전 상담시에 북한측에 이를 충분히 주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물품을 반입하는 국내업자로서는 계약된 도착일자에 선박이 도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아 손해를 보는 사례가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북한 항구의 하역시설과 연결 도로망 등 사회간접시설의 미비가 주된 원인이다. 북한물품 반입시 수량부족 사태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남한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고 계약서상에 분명하게 명시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설탕 반출사례에서처럼 대북 교역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남한의 반출물품이 남포항에 입항 될 경우 신용장에 의거한 네고서류 없이도 선편으로 발송되는 선하증권 한 장으로 통관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남한기업에 신용장을 개설한 홍콩이나 중국의 개설은행으로부터 지급거절조치를 당할 경우 물품조차 반송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홍콩이나 중국의 개설은행이 담보조건 없이 신용이나 업자와의 결탁으로 신용장을 개설하기 때문에 대금지급 보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국내 반출기업의 입장에서는 대금지급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개설된 신용장에 확인(confirmation)을 요구하는 것이 좋다. 연계교역의 경우에도 남한기업의 입장에서는 대금지급이 불안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연계교역에서도 신용장에 의한 대금결제는 주로 홍콩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홍콩에서 북한으로 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는 은행은 극히 제한되어 있으므로 현금결제를 요구하는 것도 위험을 줄이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남북교역에서는 계약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모두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용선 지연시의 배상문제, 품질불량시의 가격할인, 위장물품일 경우의 선박운임 문제 등은 중요사안으로 쌍방간에 절충 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10]

10) 대북교역에서 국내의 어떤 기업은 그들의 계약서에 "물품의 한국도착 후 물품에 이상이

한국무역협회가 대북 교역업체를 상대로 조사한 실태조사[11]에 의하면 대북 교역에서 북한상사나 중개상의 계약위반으로 손해를 본 경험이 있다는 자가 응답자의 67%에 달하였다. 그리고 북한상사나 중개상이 가장 많이 위반하는 경우로 응답자의 47%가 「납기위반」을 지적해 납기지연으로 판매시기 실기에 따른 피해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품질위반」도 37%에 달해 당초 계약당시의 견본과 품질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납기 및 품질위반이 전체 계약위반의 8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Ⅲ. 紛爭解決合意書의 構成과 內容

1. 合意書 체결의 意義

그간 남북간에는 경제제도와 상관습이 다르기 때문에 남북간 경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사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여 왔다. 특히 남북한 상거래에서는 북한측의 납기지연과 제품불량 등에 따른 계약불이행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간에는 서로의 상사중재제도에 대한 불신이 있었고 통행과 통신의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중재판정에 따른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여 상대방의 상사중재기관 이용을 기피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1988년 남북경협이 개시된 이래 남북사이에 발생한 상사분쟁에 대해서는 양측의 상사중재기관(남한: 대한상사중재원, 북한: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에서 해결한 선례가 없다. 이는 남북한 거래당사자간에 상사분쟁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양측의 중재기구를 이용하여 해결하기보다는 전적으로 손실을 감수하거나 적당히 합의에 의해 해결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특히 남한 측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북한과의 교역활성화에 있어 최대 장애요인의 하나였다.

있을 시에는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선박이 입항하면 물품확인 후 이상이 있으면 북측에 즉시 이의를 제기한다."라고 클레임조항을 삽입하였는데 바람직한 일로 생각된다.

11) 한국무역협회, 『남북교역 및 투자 실태조사』, 1996.2, pp.34-36.

앞으로 남북간의 경제교류가 활성화되면 상사분쟁의 발생 가능성도 그에 비례하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남북간 분쟁해결합의서의 타결은 남북경협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 合意書의 構成

분쟁해결합의서는 크게 3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문(前文), 본문 및 부록이 그것이다.

전문에서는 남북 정상간에 발표된 '6.15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진행되는 남북한간의 경제교류와 협력이 외국과 외국과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임을 선언하고 있다. 그리하여 남북한 민족내부간의 경제교류와 협력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남북 당국간에 분쟁해결에 합의함을 선언하고 있다.

본문은 총 19개 조문으로 구성되었고 남측의 서명자는 남북장관급회담 남측 대표단 수석대표인 박재규 통일부장관이며 북측의 서명자는 북측상급회담 북측 대표단 단장인 전금진 내각책임참사이다.

분쟁해결합의서에서는 합의서의 효력발생과 폐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12] 즉, 남과 북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또한 합의서는 남북한 일방이 상대방에게 폐기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지며 폐기통지는 통지한 날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고 하였다. 합의서의 효력기간 내에 접수한 중재신청에 대해서는 이 합의서의 효력이 상실된 후에도 이 합의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였고 남과 북은 합의서 서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중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정한다고 규정하였다.

분쟁해결합의서의 해석과 적용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들은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직접 결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정하는 기관에서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하였다. 또한 남과 북은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분쟁해결합의서의

12) 분쟁해결합의서 제19조.

조항을 수정하거나 보충할 수 있으며 수정·보충되는 조항은 남과 북이 서명해야하고 남북한이 각각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하도록 했으며 문본 교환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도록 규정하였다.[13]

분쟁해결합의서 부록에서는 중재관련 용어들에 대하여 남측과 북측의 주요 용어를 비교하여 나열하고 있다. 남북이 분단된 후 긴 세월이 지나고 보니 북한에서 사용하는 중재용어가 우리에게는 매우 생소하게 느껴진다. 중재판정을 '재결'로, 중재인을 '재결원'으로, 의장중재인을 '책임재결원'으로, 중재판정부를 '재결원협의회'로 호칭하는 등이다.

부록에서는 13개의 중요 용어에 대해 "쌍방의 합의서에서 다음의 용어는 같은 의미를 지닌다."고 선언하면서 다음과 같이 열거·대비하고 있다.

남 측	북 측
중재판정	재결
중재인	재결원
의장중재인	책임재결원
중재판정부	재결원협의회
중재인명부	재결원명단
법령	법
활동보장	사업보장
국제법의 일반원칙	공인된 국제법의 기본원칙
구성하다	내오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판정	다수가결의 방법으로 채택
서명	수표
문본	문건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집행	집행제도에 따라 집행을 보장

13) 분쟁해결합의서 제18조.

3. 合意書 內容分析

(1) 紛爭解決의 原則

분쟁해결합의서에서는 남북간에 발생하는 상사분쟁은 먼저 분쟁당사자간의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하며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중재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4] 따라서 앞으로 남북한 당사자간의 상사분쟁은 중재 전(前) 단계인 '협의'단계에서 많이 해결될 것이고 분쟁금액이 크거나 사건의 내용이 복잡하여 협의단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들은 중재를 통해 최종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재 전 단계에서 당사자간에 '우호적인 협의'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 전례는 과거 동서국가들 중 중국과 미국, 중국과 일본간의 무역협정에서 발견된다. 이는 분쟁처리에 있어 우호협상이나 타협을 중시하여온 중국의 관습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1992년에 우리 나라가 중국과 체결한 한-중 무역협정에서도 나타나고 있다.[15] 1979년에 체결된 미-중 무역협정 제8조 제1항에서도 "through friendly consultation, conciliation or other mutually acceptable means"라고 규정함으로써 중재 전 분쟁해결수단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표현은 미국이 중국과 체결한 무역협정에서 유별난 것으로 과거 미국이 루마니아, 폴란드 및 헝가리 등의 사회주의 국가와 체결한 무역협정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16]

---

14) 분쟁해결합의서 제1조.

15) 한-중 무역협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먼저 양국의 거래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하면 이를 우호적인 협의로 해결하는 것을 장려한다. 그러나 분쟁을 당사자간의 우호적인 협의에 의해 해결할 수 없으면 당사자간의 계약 또는 계약과 관련된 별도의 중재약정에 따라 분쟁을 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간의 무역협정에서도 한-중 무역협정에서와 비슷한 표현을 하였다. 즉 계약으로 인한 분쟁은 우호적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고 우의적 해결에 이르지 못하면 중재에 회부하도록 하였다.

16) 더 자세한 내용은 후술하는 Ⅳ장 1절 참조.

(2) 仲裁委員會의 構成 및 機能

분쟁해결합의서는 분쟁해결기관의 설립과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17]

남과 북은 경제교류와 협력과정에서 생기는 상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각각 위원장 1명, 위원 4명으로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로 호칭)를 구성하도록 하였다. 남북한 상사분쟁의 해결을 위해 상설중재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되는 중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진다.

첫째, 교역 및 경협분쟁의 중재, 조정 및 관련사무처리의 기능이다.

이는 남북간 교역 및 경협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중재 또는 조정 및 그와 관련한 사무처리를 위한 기능이다. 분쟁의 당사자는 남과 북의 당사자 사이 또는 일방의 당사자와 상대방의 당국이다. 아직 분쟁해결합의서가 정식으로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시행세칙 등이 제정되지 않아 속단하기는 어려우나 분쟁당사자로 '당국'을 명시한 것은 국영무역이 중심인 북한의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투자분쟁의 중재, 조정 및 관련사무처리의 기능이다.

이는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이하 "투자보장합의서"로 호칭)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분쟁이다. 투자보장합의서에 의해 부여된 권리의 침해로 남북한 일방의 투자자와 타방(당국) 사이에 발생되는 분쟁을 말하는데 여기서도 분쟁이 발생하면 분쟁의 당사자는 먼저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하되 협의에 의한 해결이 불가능하면 중재의 방식으로 분쟁을 최종 해결하기 위해 중재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투자보장합의서는 '투자자'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데 '투자자'란 남북한 어느 일방의 지역에 투자하는 상대방의 법인 또는 개인을 의미하는데, 더 구체적으로는 ① 일방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고 경제활동을 진행하는 회사, 협회, 단체 같은 법인과 ② 일방에 적을 두고 있는 자연인을 말한다.[18]

---

17) 분쟁해결합의서 제2조-제4조.
18) 투자보장합의서 제1조 제2항.

투자보장합의서는 '투자자산'을 남과 북의 투자자가 상대방의 법령에 따라 그 지역에 투자한 모든 종류의 자산을 의미한다고 정의하면서 주요 투자자산을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다. 즉, ① 동산, 부동산과 그와 관련된 재산권 ② 재투자된 수익금, 대부금을 비롯한 화폐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청구권 ③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의장권, 기술비결을 비롯한 지적재산권과 이와 유사한 권리 ④ 지분, 주식, 회사채, 국공채 등과 같은 회사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권리 ⑤ 천연자원의 탐사, 채취 또는 개발을 위한 허가를 비롯하여 법령이나 계약에 따라 부여되는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사업권 ⑥ 이 밖에 투자자가 투자한 모든 자산투자 또는 재투자된 자산의 형태상 변화는 투자를 받아들인 일방의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투자자산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9] 또한 투자보장합의서에서 '수익금'이란 이윤, 이자, 재산양도소득, 배당금, 저작권 또는 기술사용료, 수수료 등과 같이 투자의 결과로 생기는 금액을 의미한다.[20]

셋째, 중재규정과 관련규정의 제정 및 수정·보충기능이다.

상설중재기관은 스스로의 중재규칙을 가지고 있다. 분쟁해결합의서에서 중재위원회가 상설중재기관으로서 그 자신의 중재규칙을 제정하거나 수정·보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남북간의 모든 상사분쟁이 상설중재기관에 의해 제도적 중재(institutional arbitration)로서 해결될 것을 의도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앞으로 남북한 상사분쟁은 중재위원회에서 제정한 중재규칙에 따라 모든 분쟁이 해결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배제한 임시 내지 특별중재(ad hoc arbitration)는 현실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상설중재기관으로는 기존의 중재기관인 남한의 대한상사중재원이나 북한의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을 배제하고 분쟁해결합의서 자체에서 '남북상사중재위원회'라는 상설중재기관을 창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는 달리 한-중 무역협정에서는 "중재의 경우 당사자로 하여금 양국의 중재기관을 이용하도록 장려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한-중 양국 기존의 중재기관(한국: 대한상사중재원, 중국: 중국국제경제

19) 투자보장합의서 제1조 제1항.
20) 투자보장합의서 제1조 제3항.

무역중재위원회)에 의한 기관중재 내지 제도적 중재를 강조하고 있다.[21]

넷째, 중재인 선정기능이다.

중재판정부를 구성할 중재인의 선정을 위하여 중재위원회에서 남북 쌍방은 각각 30명의 중재인을 선정하여 '중재인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상호 교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쌍방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자기측의 중재인 가운데서 변동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통지하도록 하였고 중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도 필요에 따라 중재인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22] 그리고 중재신청이 접수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당사자가 중재인을 선정하지 않는 경우와 당사자에 의해 중재인이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재인이 의장중재인을 선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중재위원회가 개입하여 해당중재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23]

따라서 분쟁해결합의서에서는 남북 양측의 기존 중재기관이 유지·관리하고 있는 중재인 명부를 이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이를 유지·관리하도록 하였다. 대한상사중재원의 경우 현재 1,000명이 넘는 각 분야의 전문가를 중인인 명부에 등재하여 유지·관리하고 있는데 비하면 남북 중재위원회가 유지·관리하는 중재인 명부상의 중재인 수는 극소수에 속한다. 추측컨대 남북 분쟁유형에 따른 전문가를 소수정예로 유지하여 집중심리제도 등을 도입하여 중재판정업무에 전담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상당한 무리가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당사자가 해당사건의 중재를 위하여 중재인을 선정할 때 남북 양측 기존 중재기관의 중재인 명부에서 능력과 자격이 있는 중재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중재위원회와 남북 기존 중재기관간에 협력장치를 마련해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3) 仲裁의 對象[24]

분쟁해결합의서에서는 중재위원회의 분쟁사건 관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

21) 한-중 무역협정 제6조 제3항.
22) 분쟁해결합의서 제5조.
23) 분쟁해결합의서 제10조 제3항.
24) 분쟁해결합의서 제8조.

고 있다.

첫째, 남북한 경제교류와 협력과정에서 생긴 상사분쟁이다.

이는 남북 교역과 경협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으로 이미 앞의 남북 교역 갈등사례에서 본바와 같이 앞으로 남북간의 교역증대에 따라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남북간 교역에서 우리 기업 측에서 제기한 불만들을 보면, 대북 교역에서 북한상사나 북한측 중개상의 계약위반으로 손해를 본 경우가 많았는데 북한측의 납기위반과 품질위반이 계약위반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둘째, 남북한간에 발생하는 투자분쟁이다.

이는 투자보장합의서에 의해 부여된 권리의 침해로 남북한 일방의 투자자와 타방당국 사이에 발생되는 분쟁을 말한다. 교역분쟁의 당사자와는 달리 남북한 투자분쟁의 당사자의 일방은 투자자(법인 또는 개인)이고 타방은 일방의 정부당국이다. 그렇다면 주요 투자분쟁은 어떤 것들인가? 먼저 우리 나라와 중국의 경우를 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 나라가 중국과 체결한 한-중 투자보장협정에서는 투자분쟁의 당사자에 관하여 "투자와 관련한 일방국가의 투자자와 타방국가의 정부간의 분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투자분쟁을 "보상금액에 관한 일방국가의 투자자와 타방국가의 정부 또는 동 타방국가의 법령에 따라 보상의무를 가진 여러 기관간의 분쟁"이라거나 "일방국가의 투자자와 타방국가 정부간의 기타 문제에 관한 어떠한 분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25] 여기서 보상금액이란 타방국가의 영역안에서 투자자의 투자에 대한 국유화나 수용시 이루어지는 금액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투자보장협정에는 자본수출국의 국민 및 회사의 투자자산에 대한 수용, 국유화 기타 그에 준하는 직간접의 여러 조치에 대하여 엄격한 조건을 부과하고 있다. 예컨대 투자자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금액이 지불되어야 함과 동시에 공공목적, 무차별, 적법절차 및 투자자에 대한 약속의 이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한-중 투자보장협정에서는 중국이 워싱턴협약의 당사국이 되는 경우 중국이 ICSID[26]에 대한 유보통고를 통하여 ICSID에 회부하지 아니하기로 한 분쟁을 제외

25) 한-중 투자보장협정 제10조.

26) 워싱턴협약에서는 투자분쟁의 조정과 중재를 담당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기구가 투자분쟁국제해결본부(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한 모든 분쟁은 일방국가의 투자자 또는 타방국가의 정부의 요청에 따라 워싱턴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ICSID에 회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27] 이후 중국은 워싱턴협약을 비준하면서 가입조건으로 국유화나 수용에 따른 보상관련 분쟁에 한해서 ICSID의 중재에 회부하겠다고 ICSID에 통고하였다.

앞으로 남북간의 투자분쟁은 남북한의 일방 정부당국이 투자보장합의서를 이행하지 않아 투자자가 중재위원회에 중재요청하는 분쟁들이 될 것이나 가장 중요성을 가지는 분쟁은 역시 한국과 중국의 경우처럼 투자자의 투자에 대한 국유화나 수용에 따른 분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하여 남북한은 수용 및 보상에 관하여 상대방 투자자의 자산을 국유화 또는 수용하거나 재산권을 제한하지 않으며 그와 같은 효과를 가지는 조치(즉 수용)를 취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목적으로부터 자기측 투자자나 다른 나라 투자자와 차별하지 않는 조건에서 합법적 절차에 따라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자산에 대하여 수용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신속하고 충분하며 효과적으로 보상을 해주도록 하였다. 남과 북은 수용조치를 취한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일반 상업이자율에 기초하여 계산된 이자를 포함한 보상금을 보상받을 자에게 지체없이 지불토록 했으며 보상금의 크기는 수용과 관련한 결정이 공포되기 직전 투자자산의 국제시장가치와 같도록 하였다. 또한 남과 북은 무력충돌 등 비정상적인 사태로 상대방 투자자의 재산이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 그 손실에 대하여 원상회복 또는 보상함에 있어서 자기측 투자자나 다른 나라 투자자에 대한 것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우하도록 하였다.[28]

(4) 仲裁申請과 仲裁節次 進行

중재신청이 접수된 후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조정의 요청이 있을 경우 중재위원회는 중재절차를 중지하고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당사자는 합의에 의해 조정인 1명 또는 3명을 선정하며 조정절차와 방법은 조정인이 정하도록 하였다.

Investment Disputes; ICSID)이다.

27) 한-중 투자보장협정 제10조 제10항.

28) 투자보장합의서 제4조. 한국이 과거 소련과 체결하여 러시아로 승계된 한-소 투자보장협정에서도 이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수용에 따른 보상과 관련하여 수용일로부터 2월내에 행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조).

당사자가 합의한 조정의 결과는 중재판정의 방식으로 처리하며 중재판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조정인이 선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조정절차는 종결되며 중재절차가 다시 진행되지만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29]

중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측 중재위원회 위원장에게 중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중재신청 접수일은 분쟁 당사자가 중재신청서를 제출한 날로 하였다. 쌍방의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중재와 관련한 사무를 처리할 자기측 기관을 지정하도록 하였는데 남한측 기관으로는 대한상사중재원, 북한측 기관으로는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가 지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하여 한-중 무역협정에서는 한-중 당사자간의 분쟁해결을 위하여 양국의 중재기관을 이용하도록 장려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기존의 상설중재기관에 의한 제도적 중재를 강조하고 있다.[30]

중재신청을 접수한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상대방의 중재위원회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일방의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자기측 당사자가 피신청자로 되는 경우 중재신청 제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31]

중재판정부는 당사자 합의에 따라 선정되는 중재인 3인으로 구성한다. 당사자는 정해진 기간내에 중재인의 선정에 대하여 합의를 하지 못하면 중지인명부에서 각각 1명의 중재인을 선정하며 그렇게 선정된 2명의 중재인이 협의하여 중재인명부에서 의장중재인 1명을 선정하도록 하였다.

중재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50일 이내에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한 경우 일방 분쟁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일방의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의장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쌍방의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협의하여 중재인명부에서 선정토록 하였는데 순번추첨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재인 선정은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종료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장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ICSID에 의장중재인의 선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다.[32]

29) 분쟁해결합의서 제17조.
30) 한-중 무역협정 제6조 제3항.
31) 분쟁해결합의서 제9조.
32) 분쟁해결합의서 제10조.

중재장소는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되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하지 못하면 중재판정부가 정하도록 하였다.[33] 중재판정은 중재판정부 중재인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판정문에는 중재심리에서 확인된 사실과 증거, 사건해결과 관련한 주문, 준거법, 작성년월일 등을 기재하며 중재인이 서명·날인하도록 하였다. 중재판정은 중재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나 필요한 경우 중재판정부가 당사자들과 협의하여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당사자들의 동의가 없는 한 중재판정은 비공개로 하도록 하였다.[34]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법령에 따라 중지판정을 하며 당사자가 합의한 법령이 없을 경우에는 남 또는 북의 관련법령, 국제법의 일반원칙, 국제무역거래관습에 따라 중재판정을 하도록 하였다.[35]

중재판정의 이행과 관련하여 당사자는 중재판정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중재판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관할지역의 재판기관에 그 집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남과 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재판정을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승인하고 해당 지역 재판기관의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집행하도록 하되 특별한 사정은 중재위원회가 정하도록 하였다.[36] 이는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보장키 위한 국가적 의무를 선언하는 동시에 남북한의 거래당사자들이 마음놓고 상거래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3) 분쟁해결합의서 제11조.
34) 분쟁해결합의서 제13조-제15조.
35) 분쟁해결합의서 제12조.
36) 분쟁해결합의서 제16조.

Ⅳ. 紛爭解決合意書의 實行課題

1. 南北韓 모델로서의 東西仲裁協力 現況

(1) 東獨과 西獨

동서독은 2차 세계대전 후 남북한과 함께 분단국으로 있다가 1990년 하나의 독일로 통일되었다. 통일전 동서독간의 중재는 1879에 제정된 민사소송법전의 제1025조 내지 제1048조에 의거하고 있었는데 동 민사소송법은 서독과 동독이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통일 전 서독은 중재조항에 관한 제네바의정서(Geneva Protocol on Arbitration Clauses, 1923),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한 제네바협약(Geneva Convention on the Execution of Foreign Arbitral Awards, 1927),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국제연합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1958 ; 뉴욕협약으로 약칭),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1965 ; 워싱턴협약으로 약칭),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구주협약(The European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1961) 등 국제중재에 관한 다국간 조약에 가입하였다. 국제중재분야에서 동독 또한 서독과 마찬가지로 매우 적극적이었다. 워싱턴협약에는 가입하지 않았으나 서독과 같이 뉴욕협약을 위시해서 1923년과 1927년의 제네바의정서와 협약, 1961년의 구주협약에 가입하는 외에 1972년의 모스크바협약에도 가입하였다.

과거 동서독간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동독무역회의소 부설 중재재판소'이었다. 국제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할 목적으로 1954년에 설립된 이 기관은 베를린에 소재하고 있으며 중재절차에서는 독어, 영어, 러시아어를 공용어로 사용했다. 또한 각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재인단을 유지, 관리하고 있었고

UNCITRAL중재규칙에 따른 중재관리기관으로도 기능을 수행하였다. 연간 300-400건에 달하는 국제중재사건을 처리하였는데 분쟁유형을 보면, 물품매매계약에 관한 분쟁이 제일 많았고 플랜트 수출, 라이선스계약, 대리점계약과 관련한 분쟁들도 있었다.[37]

동서독간 무역분쟁을 중재로 해결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동서독 거래당사자간의 중재경험

〔사례 1〕[38]

1976년 1월 28일 베를린에 소재하는 동독무역회의소 부설 중재재판소(Schiedsgericht)[39]에서 내려진 중재판정 사례이다. 신청인은 동독 기업이고 피신청인은 서독 기업이다. 신청인은 1970년 2월 피신청인과 특수장비 제조를 위한 독점적 기술제공계약을 체결하고 1971년부터 매년 최소 4만 5천 마르크의 로열티를 지급받기로 했는데 피신청인이 기술제공계약에 따라 만든 제품이 하나도 팔리지 않았다하여 로열티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신청인이 1971년부터 1973년까지의 최소 로열티 청구신청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계약의 해제, 중재조항의 무효, 중재인의 불공정성을 들어 로열티 지급신청을 거부하고 오히려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반대신청(counter claim)을 제기하였다. 중재판정부는 제반사정을 검토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조사한 끝에 신청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고 피신청인의 반대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 판정을 하였다.

---

37) E. J. Cohn, Martin Domke, F. Eiseman., *Handbook of Institutional Arbitration in International Trade*, North-Holland Publishing Co., 1977, pp.61-62.

38) ICCA, *"Commercial Arbitration"*, Year Book, Vol.IV(1979), Deventer: Kluwer Law and Taxation Publishers, pp.197-199.

39) 이 중재재판소는 동서독 통일 전 해인 1989년 6월까지 8,943건의 중재사건을 처리하였는데 그 중 609건의 당사자가 서독기업이었다. 통일 후에도 이 기관의 중요성에 비추어 동서중재센터로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된다(양병회, 남북상사중재제도의 법적 문제점 및 대응방안, 대한상사중재원, 1994.12, pp.22-23).

[사례 2] 40)

① 본건 역시 1981년 10월 5일 동독무역회의소 부설 중재재판소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사례 이다.

중재신청인인 동독 기업은 1977-1978년에 걸쳐 피신청인이 서독 회사에 cardboard를 공급하였으나 대금 중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자 계약서상의 중재조항에 따라 피신청인을 상대로 중재를 신청하였다. 중재절차중 당사자간에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수차에 걸친 교섭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신청인이 중재신청을 철회하고 피신청인이 합의금액을 신청인에게 송금하기로 한다는 분쟁해결 조건에 도달하였다.

② 신청인은 중재판정부에 피신청인과의 위 분쟁해결 합의 내용을 통지하면서 중재판정의 범위를 이자와 중재비용 부담문제에 한정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합의금액을 송금하였으므로 당사자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항변하면서 신청인의 청구를 거부하였다. 중재판정부는 당사자간에 교환된 모든 텔렉스 내용과 제반 증거자료들을 계약서상의 준거법으로 지정된 동독 국제상사계약법의 관계조항에 따라 조사, 해석한 후 신청인의 이자청구를 기각함과 아울러 중재절차에 소요된 중재비용도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는 중재판정을 내렸다.

(2) 美國과 中國

미국과 중국간의 교역은 18세기말인 1784년 미국 선박이 중국의 광동성을 방문했을 때 처음 시작되어 1950년에는 양국간의 교역량이 2억 3천만불에 달한 적이 있었으나 한국전쟁으로 1951년부터는 완전히 두절되었다. 그러다가 1972년 당시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여 상해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양국관계에 활로가 트였고 이어 1979년에는 정식 외교관계가 수립되었으며 동년 7월에는 역사적인 미-중 무역협정이 체결되었다.

미-중 무역협정은 전문과 1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무역분쟁의 해결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 분쟁해결에 관하여 특기할 것으로 미-중 무역협정에서는 "양

40) ICCA, op. cit., Vol.Ⅷ, pp.126-127.

국은 두 나라간의 상사, 회사 및 무역기구간에 체결된 계약으로부터 혹은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이 우호적인 협상, 조정 기타 상호간에 수락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through friendly consultations, conciliation or other mutually acceptable means) 신속, 적절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촉진키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중재 전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41] 이는 분쟁의 처리에 있어서 우호협상이나 타협을 중시하여 온 중국의 관습에 기인하는 것으로 앞으로 남북한 분쟁해결에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또한 미-중 무역협정에서는 장래 및 현존분쟁 모두 중재로써 해결이 가능함을 선언하고 있으며, 중재가 중국이나 미국에 소재하는 중재기관에 의해서 행해지거나 제3국에 있는 중재기관에 의해서도 행해질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서 제도적 중재를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중재절차에는 관계 중재기관의 규칙이 적용될 수 있고 분쟁당사자와 중재기관에게 수락이 될 수 있으며 UN이 권고하는 UNCITRAL중재규칙이나 다른 국제적 중재규칙이 적용될 수도 있다.[42]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분쟁해결과 관련하여 양국 중재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이 돋보이는데 '공동조정'(joint conciliation)이 바로 그것이다. 이 제도는 중국의 오랜 전통인 조정의 발전 형태인데 1975년이래 중국의 대외경제무역중재위원회(Foreign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 FETAC로 약칭)[43]와 미국중재협회(AAA)간에 중재 전 분쟁해결제도의 하나로서 고안된 제도이다. 1인 조정제도의 발전 형태인 공동조정은 FETAC와 AAA가 각 1인씩의 조정인을 임명하여 조정부를 구성하며 조정과정에서 국제거래관행과 실무적 경험을 활용하였다. 미국과 중국은 1977-1979년 사이에 2건의 공동조정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하였는데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44]

■ 미국과 중국 중재기관간 공동조정에 의한 분쟁해결 경험

41) 미-중 무역협정 제8조 제1항.
42) 미-중 무역협정 제8조 제2항.
43) 현재의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hina International Economic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 CIETAC로 약칭)의 이전 명칭이다.
44) ICCA Congress Series No. 1(VIIth International Congress, Hamburg, June 7-11, 1982), pp.180-181.

〔사례 1〕

① Seller의 인도지연 및 Buyer의 선복확보의무 해태로 야기된 분쟁사례이다. 미국의 Seller가 계약물건을 포장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중국의 Buyer에게 약정기간내에 물건을 인도하지 못하게 된 반면, 중국의 Buyer는 선박용선에 어려움이 있어 물건을 실을 배를 늦게 보냄으로 Seller에게 창고료 등 추가비용이 발생하자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② 당사자간에 우의적 협상이 시도되었으나 실패하자 FETAC와 AAA는 분쟁 당사자의 요청으로 공동조정에 나섰다. 공동조정을 위하여 각 중재기관은 1인씩의 조정인을 지명하였고 이렇게 구성된 조정부는 처음에는 편지로 분쟁사건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 후 북경에서 직접 접촉하였다. 조정부는 관련 증거자료에 입각하여 조사를 한 후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쌍방 당사자 모두에게 잘못이 있지만 중국 Buyer가 물건인수를 위하여 선박을 너무 늦게 보냈기 때문에 미국 Seller에게 창고료, 보험료 등을 포함하여 손해를 입혔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조정부는 중국 Buyer가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미국 Seller에게 적절한 배상을 해 줄 것을 조정안으로 제시하였고 쌍방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공동조정이 성공하였다.

〔사례 2〕

본 분쟁사건은 특정 품목의 국제 시가가 급등하였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계약단가의 재조정이 필요하게 된 상황에서 물품매매계약이 체결되어 발생된 분쟁사례이다. 계약서에는 물품단가에 대한 확정이 없었고 단지 단가는 인도 당시의 국제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세에 따라서 결정된다고만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후 당사자가 단가결정에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AAA와 FETAC는 편지와 텔렉스로 공동조정을 시도하였다. 공동조정의 결과 분쟁당사자는 피차 유리한 조건으로 단가에 합의하였고 계약은 성공적으로 이행되었다.

(3) 美國과 蘇聯

미국과 소련간의 무역협정(United States-USSR Agreement regarding Trade)은 1972년 10월 18일 양국간에 서명되었다.

동 협정은 제7조에서 미국과 소련간의 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중재에 의해 해결하기로 하고 1966년에 채택된 '구주경제위원회 중재규칙'에 의거한 중재를 계약서에 명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 경우에 양 당사국 이외의 제3국에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중재인을 선임케 할 것과, 미국과 소련이 아닌 제3국으로서 뉴욕협약에 가입한 국가를 중재지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협정에 의하더라도 당사자들은 상호합의에 따라 그 밖의 중재방식을 택할 수도 있었다. 그래서 대부분이 위에서 말한 구주경제위원회 중재규칙에 따르지 않고, 스웨덴에서 중재를 받도록 규정해 왔다. 어떻든 미-소 무역협정에서는 각기 자국의 무역업자와 무역기구로 하여금 제3국에서의 중재를 약정하도록 촉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소련의 대외무역중재위원회의 관할을 배제하였다.[45]

미국중재협회와 소련연방상공회의소는 1977년 1월 미국과 소련간의 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미-소 무역계약에 사용할 선택적 중재조항」(Optional Arbitration Clause for Use in Contracts in USA-USSR Trade)에 관한 중재협정을 체결하였다.

■ 「미-소 무역계약에 사용할 선택적 중재조항」에 관한 중재협정 내용[46]

이 중재협정은 그 제목이 나타내듯이 그 채택 여부가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려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특수사정에 적합한 다른 방식의 중재도 물론 가능하다. 따라서 거래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서는 소련연방상공회의소 부설 대외무역중재위원회의 중재는 물론이고 미국중재협회의 규칙에 의거한 중재나, 아니면 피신청인 국가에서의 중재도 있을 수 있다.

---

45) 장효상, 전게서, p. 387.
46) ICCA, op. cit., Vol.Ⅷ(1978), pp. 299-303.

협정의 주요내용을 보면, ① 중재절차는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라서 행해지며, ② 중재판정부는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하며, ③ 중재지는 스웨덴의 스톡홀름이며, ④ 스톡홀름 상업회의소가 중재인 선정권자가 되며, ⑤ 공용어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단일언어에 합의하지 못하면 진술, 구두심문 및 중재판정은 영어와 러시아어로 하되 기타 증거서류들은 중재판정부가 요구하지 않는 한 번역이 필요없도록 하였다.

협정에서 중요성을 가지는 중재판정부의 구성절차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각 당사자는 1인의 중재인을 선정한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부터 중재인 임명에 관한 통지를 받은 후 15일내에 자기측 중재인을 선정하지 아니하면, 피신청인이 소련 당사자인 경우에는 소련연방상공회의소가, 피신청인이 미국 당사자인 경우에는 미국중재협회가 대신 중재인을 임명한다. 이 경우 만약 소련연방상공회의소나 미국중재협회가 중재인을 임명하지 않으면 스톡홀름상업회의소가 대신 임명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임명된 2인의 중재인들은 의장으로 행동할 제3중재인을 임명한다. 만약 이들 중재인들이 피신청인측 중재인 임명에 관한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의장중재인을 임명하지 아니하면 의장중재인은 스톡홀름 상업회의소에 의해서 다음의 방법으로 임명된다.

즉, 스톡홀름 상업회의소는 미국중재협회와 소련연방상공회의소가 마련해놓은 '합동중재인명부'[47]를 당사자에게 보내면 각 당사자는 이의있는 후보자는 삭제하고 나머지 후보중재인에 대한 선정의 우선 순위를 번호로 붙어 이를 반송한다. 스톡홀름 상업회의소는 당사자가 반송해온 후보중재인 중에서 선정순위가 가장 높은 자를 의장중재인으로 임명한다. 만약 이렇게 선정, 임명된 의장중재인이 중재인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스톡홀름상업회의소는 합동중재인명부에 포함되지 않은 자로서 미국과 소련 국민이 아닌 제3국적의 국민 중에서 적격자를 의장중재인으로 임명한다.[48]

47) 변호사와 판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스웨덴, 동구국가(소련제외) 및 서방국가(미국제외) 출신 각 6인으로 하여 총 18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48) 이 중재협정에서 추천하는 중재조항 : Any dispute, controversy or claim out of or relating to this contract, or the breach, termination or invalidity thereof, shall be settled by arbit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Optional Arbitration Clause for Use in Contracts in USA-USSR Trade-1977"(prepared by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and USSR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4) 韓-中 및 韓-러시아

한국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중국의 중국국제상회간에 체결되어 1992년 2월1일자로 발효중인 '한-중 무역협정'에서는 양국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상사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분쟁해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관계조항 내용을 보면, 먼저 양국의 거래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하면 이를 우호적인 협의로 해결하는 것을 장려한다. 그러나 분쟁을 당사자간의 우호적인 협의에 의해 해결할 수 없으면 당사자간의 계약 또는 계약과 관련된 별도의 중재약정에 따라 분쟁을 중재에 회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중재의 경우 당사자로 하여금 양국의 중재기관을 이용하도록 장려하며 양국은 자국의 적용가능한 법률과 규정에 따라 중재판정의 집행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49] 한-중 무역협정은 1992년 8월 24일 양국 수교이후 민간차원의 협정에서 정부차원의 조약으로 격상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중 무역협정상의 분쟁해결을 실무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1992년 12월 15일 대한상사중재원은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와 중재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에서는 당사자간에 특약이 없으면 중재절차가 진행되는 중재지를 피신청인 국가로 하였다. 예컨대 분쟁이 발생되었고 분쟁해결기관에 대해 당사자간의 약정이 따로 없는 경우 중재신청인이 한국당사자이면 중국측 중재기관이 관장하게 된다. 반면 중국당사자가 중재신청인이면 중재는 피신청인인 측인 대한상사중재원에서 행해지도록 되어있다.[50]

한편, 한국과 소련간에 1990년 12월 14일에 서명하여 동 일자로 발효된 '한-소 무역협정'은 소련붕괴 이후 러시아에 의해 승계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소 무역협정에서는 분쟁해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양국의 법인 및 자연인은 상대국 영토내에 있는 법원과 행정기관에 원고, 피고 또는 기타의 자격으로 출두함에 있어 내국민대우를 받는다. 그들은 상업거래에 관하여

49) 한-중 무역협정 제6조 제1항-제4항.

50) 대한상사중재원은 1990년대에 들어와서 북방교역 국가인 러시아 및 동구사회주의권 국가들(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의 중재기관과 중재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중국과 체결한 협정과 같이 중재가 피신청인국가에서 진행되도록 약정하였다.

상대국 영토내에서의 소송 또는 판결의 집행,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절차 또는 기타의 책임으로부터 면제를 요구하거나 향유하지 아니한다. 그들은 또한 기타의 양자간 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업거래에 관한 과세로부터 면제를 요구하거나 향유하지 아니한다. 양 당사국 정부는 양국 거래당사자간에 체결된 상업거래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중재를 채택하도록 장려한다. 그러한 중재는 계약상의 합의에 의하여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중재규칙에 의거한 그들간의 별도 문서합의에 의하여 마련될 수 있다. 분쟁당사자간에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분재당사자는 중재의 장소로서 한국과 소련을 제외하고 1958년 6월 10일 뉴욕에서 서명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당사국 중 1국을 지정하여야 한다. 본조의 어느 것도 분쟁당사자가 상호간에 선호하고 그들의 특별한 필요에 가장 적합하다고 합의하는 기타의 중재 또는 분쟁해결방식에 합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되며 양 당사국 정부도 이를 금지하지 아니한다. 각 당사국 정부는 자국의 영토내에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존재하도록 보장한다.[51]

대한상사중재원은 1994년 5월 러시아의 러시아상공회의소 국제중재법원과 중재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한-중 중재협정의 그것과 내용에 있어 동일하다.

2. 紛爭解決合意書의 實行課題

우리 나라 대북 경제협력의 기본 목적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 증대를 통해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나아가서 평화통일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그간 남북간에 현안문제이던 투자보장과 상사분쟁해결에 관하여 남북한 당국간에 합의한 것은 남북간의 경제교류를 안정적으로 확대·증대시키는데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함께 남북한간에는 앞으로 교역과 경협 및 투자가 활성화되면 될수록 상사분쟁의 발생가능성도 그에 비례하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금번 남북한간에 합의된 분쟁해결합의서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효과있게 추진시키기 위해서는 중재실무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대응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51) 한-소 무역협정 제11조 제1항-제5항.

첫째, 중재기관간에 협력체제를 강화하는 문제이다.

남북한이 분쟁해결합의서 체결에 합의함에 따라 남북한간의 상사분쟁을 해결하는 분쟁해결기구로 3개의 중재기관이 존재하게 되었다. 분쟁해결합의서 자체에서 창설된 '남북상사중재위원회'와 기존의 상설중재기관으로서 남한의 '대한상사중재원'과 북한의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가 각 중재기관으로서 존재하게 된 것이다.

남북상사중재위원회가 교역 및 경협에 따른 분쟁과 투자분쟁을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해결이 촉진되도록 제3자 입장에서 알선자로서 행동하는 역할수행이나 조정자와 중재자로서 공정하고 신속하며 합리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우선 대한상사중재원과 비교를 해보면 이해가 빠를 수 있다. 대한중재원은 그간 수십년의 역사를 가지고 국내외 무역분쟁사건을 알선, 조정 및 중재해왔으며 분쟁사건의 처리와 대외 중재협력의 강화를 위해 그간 수십개국의 주요 중재기관과 중재협정을 체결해 왔고 이를 중재실무에 적용해왔다. 따라서 남북중재위원회가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중재기관과 긴밀하게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위에서 고찰한 바 있지만 남북간 분쟁해결합의서에서는 쌍방의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중재사건이 접수되면 중재와 관련한 사무를 처리할 자기측 기관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거하여 중재위원회와 대한상사중재원이 중재협정의 방식으로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중재협정의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중재협정의 주된 내용은 남북중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기존의 중재기관(남한에서 중재가 진행되는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이 조정사건이나, 중재사건의 진행에 실질적으로 행정적 협조를 하는 경우가 되어야 한다. 대한상사중재원이 ICC(국제상업회의소)중재법원과 체결한 협정내용과 유사한 것이 될 것이다. 즉 대한상사중재원은 ICC중재법원의 요청에 따라 중재지가 서울로 된 경우 중재심리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실에서 열리며 대한상사중재원은 ICC중재인에게 그 자신의 중재인에게 제공하는 것과 같은 중재관리상의 지원(속기, 통역, 심리조서 작성 등)을 제공하는 형태의 협력망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중재위원회의 요청이 있으면 대한상사중재원의 인적 협력 및 물적 중재시설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당사자가 원하는 경

우 당사자가 중재인을 선정하는데도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중재인명부를 대폭 확충하여 공동으로 유지·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동서교류에 대비한 제3국 중재에 대처하는 문제이다.

앞으로 정치적인 변수가 장애요인으로 남아있지만 남북한 경제교류가 본격화되고 북미, 북일간에 정식으로 수교가 되면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서경제교류가 획기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분쟁해결합의서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상사분쟁을 당사자 합의에 의해 제3국에서 중재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될 것인바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52]

제3국 중재의 경우 남북한 당사자와 외국의 거래당사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중재기관은 어느 기관인가?

제3국의 중재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북한과 과거부터 중재관계를 가진 독일의 베를린중재재판소(Schiedsgericht Berlin)로 합의하여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기업의 입장에서는 베를린중재재판소가 바람직할 것이냐는 것은 검토의 여지가 없지 않다. 거리가 멀다는 것과 함께 중재비용의 증가, 증거자료의 제출 등의 측면에서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오히려 북경에 본부를 두고있는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로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CIETAC는 상해 및 홍콩에 인접한 심천경제특구에 지부를 설치하고 있어 남북한 교역에 따른 분쟁이나 대북 투자에 따른 투자분쟁의 해결기관으로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제3국 중재기관을 고려함에 있어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AALCC중재센터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53]. AALCC는 정부차원의 국제기구로서

52) 남북간 경제교류활성화에 따라 남북한이 공동으로 제3국에 진출하는 경우 발생하는 분쟁해결의 문제나 남북한 경제교류라고 할지라도 거래당사자가 다국화된 경우의 분쟁, 예컨대 남한과 일본이 공동으로 출자한 합작투자회사와 북한과 중국이 공동으로 출자한 합영기업간의 분쟁의 경우에는 분쟁발생시 남과 북이 아닌 제3국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된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를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요청되는 것이다. 현재 북한의 법제에서도 제한적으로 제3국 중재를 허용하고 있다. 즉 대외경제계약법에서는 기존의 투자관련법상의 분쟁해결방식과 달리 북한의 '재판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을 열거하지 않고 북한 중재기관에 의한 중재, 제3국 중재기관에 의한 중재만을 규정하고 있다.

53) AALCC는 The Asian·African Legal Consultative Committee(아·아법률자문위원회)의

법률문제에 관하여 회원국 정부의 자문과 법률분야의 공동관심사에 대한 아시아·아프리카 역내 국가간의 협력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1956년에 창설되었다. AALCC는 당초 인도 등 제3세계의 국가들이 주축이 되어 창설된 후 남북한 및 중국이 가입하여 아시아·아프리카지역의 명실상부한 국제적 협력기관이 되고 있다[54]. 제3국 중재의 경우 남북한 당사자 및 북한과 외국당사자가 수락가능한 국제적 중재규칙으로는 UN차원에서 제정한 UNCITRAL중재규칙이나 ICSID중재규칙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제3국 중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남북한 중재기관 및 동서무역에서 중립적인 지위를 지닌 국가(오스트리아, 스웨덴 등)의 중재기관이 참여하는 다자 형태의 중재협정체결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의 모범으로는 대한상사중재원이 1996년 오스트리아의 연방상의 및 동 연방상의 국제중재센터와 체결한 중재협정을 들 수 있다. 동 협정은 중재 전 단계의 다양한 해결노력(협상, 알선, 조정, 등)과 각 단계별 전문가를 유지하는 명부(알선인, 조정인, 중재인 등)를 유지키로 약정한 것이 특히 돋보인다고 하겠다. 또한 동 협정체결 중재기관이 필요한 경우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인 선정권자로서 활동하기로 약정한 것도 남북한이 모두 UN의 회원국이란 점을 감안할 때 제3국 중재에 의한 남북한 분쟁해결에 대비하여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V. 結　　語

북한은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구 사회주의권의 붕괴에 따른 국제적 고립 심화와 계속되는 식량난 및 경제난 등으로 체제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로 인해 당시 북한체제의 조기붕괴가능성도 일부에서 제기되었다. 그러나 1998년을 고비로 북한은 체제안정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강성대국 건설'의 기치하에 대외개방과 북한식 체제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남북관계 및 대외관계 개선에도 상당히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약칭이다.

54) 한국의 대한상사중재원은 AALCC 산하의 쿠알라룸푸르중재센터 및 카이로중재센터와 중재협력을 위한 중재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이러한 북한체제의 안정과 최근의 변화를 보면 북한이 중국, 베트남과 같이 사회주의체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시장경제시스템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개혁·개방노선을 선택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가능성은 2001년 북한의 신년사설과 김정일 위원장의 '신사고'중시 및 중국방문 등을 통해서 상당한 정도까지 가시화 되었다. 이는 김정일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기존의 체제유지라는 소극적 입장에서 탈피하여, 부강한 사회주의를 건설하겠다는 보다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의 남북관계는 정치적 변수에도 불구하고 6.15 남북공동선언과 본 논문의 주제를 포함한 4대 현안 합의서가 남북 각자의 국내법 절차에 따라 조약으로 입법화되고 정식으로 발효되면 남북한간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장치는 마련되는 셈이다. 앞으로 남북한을 포함하여 중국, 러시아, 일본을 역내권으로 하는 동북아 경제권은 21세기 EU 및 북미경제권과 함께 세계 3대 경제권의 하나로 부상할 전망이다. 따라서 남북한 경제교류의 활성화가 진전됨에 따라 한반도를 중심으로 남북한은 물론이고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등 동서교역의 주요국가들간의 경제교류 및 남북한과의 교차 경제교류 또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이들 경제거래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을 제3국 중재로 해결해야 할 필요성도 증대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처방안도 강구하여야 한다.

독일통일의 교훈이 말해주듯이 남북한간 경제교류의 활성화 및 신속·합리적인 분쟁해결은 매우 중요하다. 남북한간 상사분쟁해결을 위한 제반 과제들을 책임 있는 정부당국과 관계 중재기관, 그리고 경제단체가 긴밀하게 상호 협력하여 분쟁해결합의서가 남북한 경제교류에 실질적으로 유용하게 작동하도록 노력해야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남북한 공영인 동시에 민족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Problems of South-North Arbitral Cooperation under Agreement on Settlement Procedure of Commercial Disput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by Prof. Kim Sang Ho
P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e South-North Joint Declaration」 of June 15, 2000 made by President Kim Dae Jung and National Defense Committee Chairman Kim Jong Il will contribute to the activation of economic exchang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o realize the fundamental spirit of the South-North Joint Declaration, the authorities concerned of south and north Korea have reached an agreement titled 「Agreement on Settlement Procedure of Commercial Disputes」 last December. In this connection, a speedy and reasonable settlement of commercial disputes arising therefrom is becoming a problem of vital importanc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lso, south and north arbitral institutions have to consider a possible arbitration agreement carefully to solve the disputes systematically under the Agreement, which will serve as an example for similar arrangements and possible harmonization in East-West commercial relations.

A variety of dispute settlements including friendly consultations,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will be used more frequently within the framework of the bilateral agreements of governmental or non-governmental level which have been concluded in the past between

socialist and capitalistic economy countries.

There is a growing tendency that East-West trade parties recognize and accept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in their contracts. So it is advisable to use the UNCITRAL Rules in arbitrations of south and north Korea in case that the interested parties fail to agree on applicable rules.

Finally it should be noted that pre-arbitral settlement called 'joint conciliation' should be reflected in the settlement mechanism of commercial disput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 parties as proved to be successful between the U.S. and China trade in the past.

Key Words ; Agreement conshltation, Arbitration UNCITRAL Arbitration Rules

참 고 문 헌

고준환, 동서무역에 관한 일고찰, 대한상사중재원「중재」제185호(1987.6).

한주섭·김상호·우성구, 최신 국제상사중재론, 동성사, 1997.2.

김상호, 클레임을 극복해야 무역에 성공한다, 도서출판 정문, 2000.4.

문준조, 중국투자의 법적 제문제, 행법사, 1991.

백권호, 투자사례로 본 대중국투자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설 지역정보센터(1992.·12).

양병회, 남북상사중재제도의 법적 문제점 및 대응방안, 대한상사중재원, 1994.12.

이순우, 상사중재의 역할과 기능, 한·중·일 법학교류학술회의(1992.8.19-21, 북경).

장효상, 국제경제법, 박영사, 1985.

최공웅, 국제소송, 육법사, 1984.

법제처, 『북한의 중재제도』, 1995.11.

통일원, 『남북교역사례집』 Ⅳ., 1995.12.

_____, 『남북교역실무안내』, 1995.12.

한국무역협회, 『남북한 경제교류협력법규집』, 1995.2.

_____, 『남북교역 및 투자 실태조사』, 1996.2.

ICCA, "Commercial Arbitration" Year Book, Vol.Ⅳ., Kluwer Law and Taxation Publishers.

_____,"Commercial Arbitration" Year Book, Vol.Ⅷ., Kluwer Law and Taxation Publishers.

Ministry of Foreign Economic Relations and Trade of the PRC, Guide to China's Foreign Economic Relations and Trade, Economic Information and Agency, 1984.

Piter Sanders, "Commentary on UNCITRAL Arbitration Rules"in ICCA Yearbook Vol.Ⅱ(1977), pp.173-174.

기타 참고자료:

1) 한-중 무역협정문
2) 한-중 투자보장협정문
3) 한-중 중재협정문
4) 한-러시아 무역협정문
5) 한-러시아 투자보장협정문
6) 한-일 중재협정문
7) 미-소 중재협정문
8) 뉴욕협약 전문
9) 워싱턴협약 전문
10) UNCITRAL 중재규칙 전문